

2026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재공고

전북특별자치도와 (재)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「2026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」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09.01

전북특별자치도지사

(재)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

1 지원대상 및 규모

- 사업명 : 2026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
- 지원규모 : 1개사
 - 사업비 : 10백만원(자부담 20%포함)
-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: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(도내 소재 생산자단체)
 - *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·컨설팅,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, 장비·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

2 참가자격

- (생산지원) 생산자단체*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
 - 공고일 현재 전북에 소재, 생산하며 조합·법인·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을 소유한 단체
 - * 5인이상 등록된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협동조합, 5인이상 작목반
 - * 생산자단체 계약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(타시도 소재업체 가능)

3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6. 9. 1.(화) ~ 9.11.(금) 15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신청방법 : 방문 및 이메일 접수
 - 방문접수 :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-1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3층 기업육성팀
 - 이메일 접수 : hj@jif.re.kr
 - 문의처 :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박희진 대리(T.063-210-6594)
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유미 사원(T.063-210-5396)
- 제출서류 :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
 - 사업신청서(붙임1) 및 사업계획서(붙임2), 사업신청 체크리스트(붙임4)
 -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, 법인등기부등본
 - 최근 2개년(23-24년) 재무제표, 25년 부가가치세증명원, 4대보험 가입명부
 - 참여농가 명단(붙임3) 및 참여 농가별 계약재배 약정서(붙임6)
 - 식품기업과의 원료공급 계약서 및 식품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
 - 자부담 통장내역, 개인정보이용동의서(붙임5) 등
- 선정통보 : 선정 생산자단체 · 식품기업 개별 직접 통보

4 지원절차

절차	주요내용	진행일정
사업공고	-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jif.re.kr)	'26.09.01(화) ~ 09.11(금)
↓		
신청서 접수	온라인 및 오프라인 (동시 접수)	'26.09.01(화) ~ 09.11(금)
↓		
선정평가	지원기관 :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(대면평가) ※ 1회차 지원 생산자단체는 현장점검	~ '26. 09. 18(금)限
↓		
선정평가 결과통보	지원기관 : 선정평가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	~ '26. 09. 23(수)限
↓		
협약	지원기관 : 선정기업 진흥원 방문 및 협약	~ '26. 10. 02(금)限

- * 1) 상기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 2)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- 선정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,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
- 제출(구비)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후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완료 후(자부담으로 우선 집행) 이행실적, 지출 증빙자료 등 최종 확인 후 사업비 지급
- 지원대상 요건, 범위, 한도 등 세부내용은 '세부사업 설명자료'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세부사업 설명자료 (반드시 숙지)

1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

- ☐ 식품·외식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지원
 - 계약재배 관련 생산자단체 교육·컨설팅, 생산물 품질관리,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·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

나. 사업 내용

☐ 운영기간 : 2026년 9월 ~ 11월

☐ 추진방안

- (계획수립) 생산자단체 세부사업계획 수립·제출
- (대상선정) 식품·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(신청서는 붙임3 참조)

< 지원대상 요건 >

- ① **대상:**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)
 - * 사업 공고일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
- ② **계약유형:** 생산자단체-식품·외식업체, 생산자단체*-제3자(지역농협 등)-식품·외식업체
 - * 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자(법인인 경우 임직원), 직계존비속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제외
 - (식품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(식품제조·가공업), 제3호(식품첨가물제조업), 제5호나목4(식품소분·판매업 중 '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')
 - (외식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(식품접객업),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(본사)
- ③ **거래금액:** 지원액(국비·지방비의 합)의 3배 이상
- ④ **지원제한:** 농협, 6차산업인증자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모두 가능한 사업자는 생산지원 또는 이용지원 중 1가지 유형으로만 지원 가능
- ⑤ **지원기간:** 지방정부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(3년) 한도 내 지원 가능
 - **추가지원:** ①상생협력 우수사례 농식품부장관상 수상업체 ②계약재배 활성화 업체(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·거래액 중 한 가지 항목이 30% 이상 증가한 업체)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
 - **최대지원 횟수:** 추가 지원 등을 모두 합하여 총 8회까지만 가능

- (선정기준) ①연계의 효과성(30%), ②연계의 지속성(30%), ③사업 계획의 적절성(20%), ④향후 파급효과(20%) 등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

< 선정기준 고려사항 >

- ① 연계의 효과성 :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·비금전적 효과를 평가
 - ② 연계의 지속성 :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
 - ③ 계획의 적절성 :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
 - ④ 파급효과 :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,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
- ※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,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

○ 지원범위

- ① **교육 및 컨설팅** : 작물 재배 관련 매뉴얼 보급,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 등의 비용
- ② **품질관리** : 계약재배와 관련된 인증 수수료(GAP 등), 품질·안전성검사, 위탁관리, 종자·비료 등 생산요소 변경(차액), 시범포* 조성 등의 비용
 - *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(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)하고, 시범포 운영은 사업기간(1년)이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- ③ **영농환경 개선** :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, 재배지역 환경 정리, 농자재 보관·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
- ④ **공동 장비 및 시설 임차·관리비** :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산물·농자재 보관·저장을 위한 창고·싸일로 등의 공동 시설과 파종·경작·방제·수확·운송용 공동 장비 등을 임차·관리(정비 등)하는 비용
 - * (임차비 예시) 저온/냉동 저장고, 물류기기(팔레트, P박스), 운송차량 임차(생산자단체→식품기업, 개별생산자→생산자단체), 공동수확장비 등
 - 단, 자산성 장비를 보조금으로 장기 임차 후, 최종 구매하는 건은 지원 불가
- ⑤ **기타** : 협의회, 간담회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

○ (예산지원)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

① 예산부담 : 사업비 기준 국고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

② 지원한도 :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

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

※ 지원한도는 국비·지방비의 합만 포함한 금액임

다. 예산집행 기준

※ 정산 시 반드시 지출내역별 관련 증빙 확인(증빙 미비 시 해당 항목 정산 제외)

항목	내역	지급기준	비고
교육 및 컨설팅	강사·컨설팅비	실비 (강사는 지방정부 정산 기준 적용)	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컨설팅비
	매뉴얼개발 및 보급비	실비	실용적 재배기술·품질관리 매뉴얼 보급
	선진지 견학비	실비	우수사례 견학 * 국내에 한함
농산물 품질관리	인증비, 검사비 등	실비	농산물 품질 제고
	생산요소 변경	실비	생산요소 변경 또는 신규 적용에 따른 발생 차액 * 정산 시 비교견적 제출
	시범포 조성	실비	품목(품종) 테스트
	위탁 수행비	실비	재배·병해충 관리 위탁
영농환경 개선	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	실비	위생·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
공동시설·장비	임차관리비	실비	농산물 생산·수확·보관·운송 등
기타	행사·홍보비	실비	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·홍보 등
추가 증빙	계약재배 이행 여부 확인	-	납품 및 대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(붙임6, 필수 제출) * 사업 정산보고 시 붙임6 양식과 함께, 거래송장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거래내역, 사진 등 제출